

2023년 제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안건

연번	안건명	의결사항	수정사항
1	2022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원안의견	
2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개정(안)	수정의견	제4조 2항 일반부의계약 문구 수정 5,000만원 → 총액 5,500만원

2023. 4.2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연두 (인)	위원	박훈 (인)
위원	임정하 (인)	위원	배현숙 (인)
위원	최용준 (인)	위원	형남원 (인)
위원	송지희 (인)	위원	김철한 (인)
위원	류순태 (인)	위원	임은희 (인)
위원	김도경 (인)	위원	제세영 (인)
위원	권택기 (인)		

2023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일시	2023년 4월 24일(월요일), 14:00 ~
회의장소	대학본부 7층 소회의실
참석위원 (11명)	산학협력단장(정연두), 교무처장(박훈), 기획처장(임정하), 행정처장(배현숙), 산학협력부단장(최용준), 형남원, 송지희, 임은희, 김도경, 제세영, 권택기
불참위원 (2명)	김철한, 류순태

□ 회의 심의안건

- 2022 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개정(안)

□ 회의내용

- 산학협력단장: 안녕하세요? 2023년 제3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22년 회계연도 학교기업 및 산학협력단 결산안과 연구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개정 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에 대해 부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네. 첫 번째 심의안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총액, 지출총액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학교기업 회계 결산 부분은 학교기업 담당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학교기업 더고구마 김선형입니다. 학교기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더고구마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 현황 보고

- 산학협력단장: 혹시 학교기업 더고구마 결산안에 대해 질문있으신가요?
- 박훈 교무처장: 학교기업 결산 자체에 대한 질문은 없고, 제가 처음 운영위원을 하다보니 산학협력단과 학교기업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기업은 교육부 인력양성 사업으로 R&D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학교기업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활성화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기업을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야 하기 때문에 산학협력단 지점으로 속해 있습니다.
- 시공간분석연구소 이승일교수: 학교기업 대표가 저희가 아니라, 산학협력단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기업이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실습에 중점을 둔 학교에서 세운 기업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외부 회사에서 실습을 받기 어려우니, 학교에서 실습할 수 있는 회사를 세우고, 수익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 목적의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시공간분석연구소 이승일교수님 안건 보고 먼저 하시고, 학교기업에 관련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공간분석연구소 이승일교수: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 대표 이승일입니다. 시공간분석연구소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시공간분석연구소 운영성과 및 재무상태 현황 보고
- 임정하 기획처장: 시공간 분석 연구소에 질문이 있습니다. 탄소 중립 계획 사업은 자회사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공간 분석연구소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나요? 왜 자회사를 만들어서 해야만 하나요?
- 시공간분석연구소 이승일교수: 시공간분석연구소는 이익이 발생하면 산단으로 다 귀속이 되고 일정부분만 배분을 합니다. 박사과정등 대학원생들이 실제 일을 하고 인건비를 받아야 하는데, 인건비 형태로 지급할 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기업지원사업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하다보면, 한국연구재단이나 국토부 사업을 할수 없게 차단되어 있다 보니 시공간분석연구소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임정하 기획처장: 네, 그럼 자회사는 학교기업이 아닌 건가요?

■ 더고구마 김선형교수: 네, 그렇습니다. 덧붙여 설명하면, 학교기업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기업은 다른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택기 교수: 그래서 자회사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자회사의 소유주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법인인거죠?

■ 시공간분석연구소 이승일교수: 네, 학교에 기술지주회사가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운영합니다.

■ 권택기 교수: 네, 알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네, 학교기업 결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리다면, 학교기업의 시행 목적인 현장실습 실적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부단장님께서 이어서 산학협력단 회계 결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최용준 산학협력부단장: 산학협력단 수입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산학협력단 수입현황 및 지출현황 등 보고

■ 산학협력단장: 보고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 김도경 교수: 질문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사업수주 금액이 증가했는데, 사업 수주액 증가에 따라 운영비용도 증가하는데요. 수익과 함께 운영비도 함께 증가하다보니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수익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이 열심히 사업을 수주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의문이 드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단기 운영 차익이 전년도에 비해서 46% 감소했는데, 그 차익이 11억 정도입니다. 저희가 간접비 사업비를 13억 증액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간접비 수익 중에 지난해보다 13억 더 교수님들께 지원해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간접비 수입을 모으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들께 지원사업 형태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연구를 활성화시키고, 연구과제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도경 교수:2020년도 대비 2021년도도 간접비 사업비에 대한 지원액은 변동이 없었던 건가요?

■ 산학협력단장: 지원하는 사업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형남원 교수: 산학협력단에서 투자하고 있는 예금 상품은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업체나 은행에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산학협력단 직원이 결정을 하는건가요?

■ 양수정 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양수정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운용을 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으로 가입을 해야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상품을 전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금 보장된 상품 내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여러 은행들의 시장조사를 해서 1년짜리 6개월짜리 장기상품 등을 조사해서 가장 높은 이율을 가진 상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형남원 교수: 네, 그럼 직원분께서 직접 결정을 하는 부분이네요.

■ 양수정 경영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 임정하 기획처장: 산학협력단 수입현황의 과목에 '장기 금융 상품의 감소'라고 되어 있는데, 수입의 과목 명칭으로 적정한 건가요? 장기금융 상품의 감소는 현금으로 잡혔다는 건데,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과목을 표기해야 하지 않나요?

■ 양수정 경영지원팀장: 네, 검토해서 적절한 용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지희 교수: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을 많이 내서 교수님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부분을 잘해야 수익률이 높아지는지는 자료를 보고는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예를 들면 R&D사업을 가져오면 수익이 더 높아진다가, 경영학과는 계약학과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익이 높아지는데 기여하는건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준 산학협력부단장: 비중이 가장 큰 것은 6페이지 수입현황 자료에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학과나 용역사업의 수익인 산학협력수익과 BK사업이나 R&D사업에서 발생하는 지원금 수익이 간접비 수익이 비중이 높고, 중요한 수익이라고 생각합니다.

■ 산학협력단장: 지금 결산을 보고 하고 있어서, 수입 지출 항목 위주로 보고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항목이 수익률이 좋아야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고민해보고 어떤 부분을 더 신경써야 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훈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은 공익법인으로 분류가 되어서 아마 수익 사업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법인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 양수정 경영지원팀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 부분은 법인세 신고를 하는데요. 저희가 비영리 법인이다 보니 수익 사업에서 나온 당기 순이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없습니다.

■ 박훈 교무처장: 네, 알겠습니다.

■ 배현숙 행정처장: 말씀드리고 싶은건 산학협력단의 주 목적이 단순하게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산을 계속 축적하지 않고 학교의 연구나 학생들을 위해 어떻게 쓸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을 작년보다 15억 정도는 더 늘렸습니다. 행정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배현숙 행정처장: 그리고, 단기 상품 같은 경우 적은 금액으로 여러 개를 가입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런건가요?

■ 양수정 경영지원팀장: 간접비 사업비를 사용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 상품 가입이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여 적은금액 여러 개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 배현숙 행정처장: 그럼 매월 나가는 금액의 평균을 보거나 해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운용할 수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양수정 경영지원팀장: 저희가 과제별 계좌로 운영하는 방식이라서 금액이 계좌별로 쪼개져 있어서 그러는데, 모계좌 형태의 다른 상품이 있는지 은행쪽과 협의하여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첫 번째 안건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결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들: 네

■ 산학협력단장: 두 번째 심의안건에 대해 부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 최용준 산학협력부단장: 두 번째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 관련근거, 개정사유, 주요골자 등 설명

■ 산학협력단장: 두 번째 안건에 대해 질문 있으신가요?

■ 박훈 교무처장: 일반 수익 계약 중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의 해당 계약금액 기준을 부가세를 포함해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인가요?

■ 김연희 담당자: 상위 규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는 현재 추정가격으로 부가세 제외 금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수익계약과 입찰 금액기준을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해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규정을 전부 개정했었는데, 이 부분만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 임정하 기획처장: 면세 기업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김연희 담당자: 면세 기업의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격 기준으로 맞춰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총액 5500만원까지는 상위 규정 적용해서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 박훈 교무처장: 바뀌는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건데, 부가세 포함해서 규정을 반영한다는 거죠?

■ 김연희 담당자: 네 맞습니다.

■ 김도경 교수: 그러면 신규조문 대비표 1페이지 제4조 2항에 5500만 원 앞에 총액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더 명확해 질 것 같습니다.

■ 김연희 담당자: 네. 그럼 총액 5500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학협력단장: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시면, 김도경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 반영하여 총액 5500만원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들: 네

- 산학협력단장: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